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3. 16) 상정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3. 16)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 가. 제안이유

- 제증명등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인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또는 장애인들이 관내에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 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 비영리단체와 교수학생 등이 학술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 관련법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함.(안 별표 1)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취지에 맞춰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p>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5호
의결 년월일	2004.3.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제증명등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또는 장애인등이 관내에서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 나. 비영리단체와 교수·학생등이 학술·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 다. 관련법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 함.(안 별표 1)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천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부천시”를 “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8. 참전군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9.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1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1 증명 제1호중 (4)식품영업허가및신고(폐업)사실증명란을 삭제하고, 동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6호중 (1)위생관리용역업 신고란·(2)위생관리용역업 변경신고란·(7)이·미용사 신규면허란 및 (8)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통관계			
(1)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대	1,4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대	1,400원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대	1,400원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4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5.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u></p>
<p><u>〈신설〉</u></p>	<p>6.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u></p>
<p><u>〈신설〉</u></p>	<p>7.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u></p>
<p><u>〈신설〉</u></p>	<p>8. <u>참전군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u></p>
<p><u>〈신설〉</u></p>	<p>9. <u>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52 322 421 360"><u>〈신설〉</u></p> <p data-bbox="236 1901 411 1939">②(생략)</p>	<p data-bbox="842 322 1407 801">1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p> <p data-bbox="916 824 1407 1245">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p> <p data-bbox="935 1267 1407 1563">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p> <p data-bbox="935 1585 1407 1877">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 data-bbox="842 1901 1107 1939">②(현행과 같음)</p>